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 집 요 강



세 종 대 학 교

입학안내

☎ 02-3408-3456, 4455

목 차

I. 전형일정	1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III. 원서접수 안내	3
IV.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4
V. 서류제출	8
VI. 전형방법	12
VII. 전형료	13
VIII. 지원자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14
I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환불 안내	16
X. 학사안내[장학금, 기숙사, 학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17
[양식] 각종 제출서류	23

I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24. 7. 8.(월) 10시 ~ 7. 11.(목) 17시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ipsi.sejong.ac.kr http://www.jinhakapply.com ▶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한 시간 내에 원서접수가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서류제출	2024. 7. 8.(월) 10시 ~ 7. 12.(금) 17시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출력가능)를 대봉투 겹면에 부착하여 국내 우체국 등기우편 으로 본교 입학과로 제출 ※ 등기우편은 7. 12.(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주소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입학과(집현관 206호)
수험생 유의사항 및 고사장 안내	2024. 7. 17.(수) 예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를 통해 안내 (개별 통보하지 않음)
영어 필답고사	2024. 7. 19.(금) 10시 ~ (09시 30분까지 입실완료)	▶ 본교 지정장소 (신분증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 ▶ 약 80분간 진행 예정이며, 중도에 퇴실할 수 없음
최초 합격자 발표	2024. 9. 6.(금) 17시 예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를 통해 발표 ※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4. 12. 16.(월) 10시 ~ 12. 18.(수) 16시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해 등록의사 확인
추가 합격자 발표 (재외국민 미등록 총원 합격자 발표)	2024. 12. 19.(목) ~ 12.26.(목) 18시 까지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를 통해 발표 ※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최초합격자 발표 시 총원 관련 내용 공지예정
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10시 ~ 2. 12.(수) 16시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등록금납부 고지서를 확인한 후 합격자 본인의 지정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문서등록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최종합격이 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 최초/추가합격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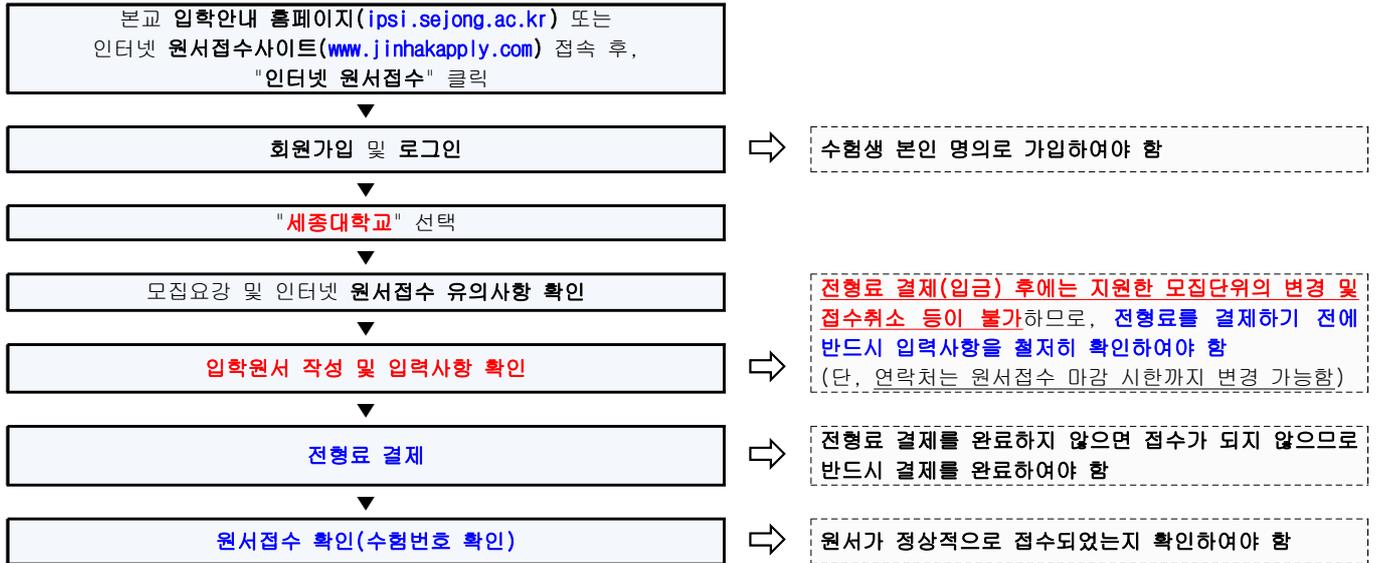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전공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외근무자의 자녀)	(정원무관)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자유전공학부 *		22			
인문 계열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1			
		국제학부	영어데이터융합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4			
		역사학과		-			
		교육학과		1			
	사회과학	행정학과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법학과		1			
	경영경제	경영학부		5			
		경제학과		1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5			
자연 계열	자연과학	수학통계학과		2			
		물리천문학과		2			
		화학학과		1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바이오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5		50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2			
		AI 융합전자공학과		3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			
	인공지능융합	컴퓨터공학과		4			
		정보보호학과		1			
		AI 로봇학과		19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14			
		지능정보융합학과		12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8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5 5			
		공과	건축공학과		2		
			건축학과		2		
			건설환경공학학과		2		
	환경융합공학과			2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1			
	기계공학과			3			
	나노신소재공학과			3			
	양자원자력공학과			-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지능형드론융합전공	2 7			
예체능 계열	예체능		회화과		-		
		패션디자인학과		-			
		음악과		-			
		체육학과		-			
		무용과		-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			
계					50		

교육여건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함

- * 상기 모집단위(전공) 및 입학정원은 학칙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 *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AI로봇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은 첨단학과임
- *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후 대학 내 모든 전공 선택이 가능함(단, 예체능대학, 창의소프트학부, 첨단학과, 정원외 계약학과·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는 제외)
- * 지정된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

III 원서접수 안내

1.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한[2024.7.11(목) 17시] 정각에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2. 수험표 출력

- 가. 전형료 결제 후 수험표 출력 창으로 자동 이동하며, ‘수험표 출력’을 클릭하여 수험표를 출력함
- 나. 지원자는 고사 당일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졸업예정자에 한함)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원서접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험표 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음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반명함판)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함
 - ※ 배경이 있거나 스냅 촬영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 SI 프로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가공·편집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 나. **전형료 결제(입금)를 마쳐야 수험번호가 부여됨**
- 다. 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원서수정이 가능하나,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원서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라.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00. 1. 1 이전 출생자의 경우 뒤의 일곱 자리는 5000000(남자), 6000000(여자)으로 입력하며, 2000. 1. 1 이후(1. 1 포함) 출생자의 경우 뒤의 일곱 자리는 7000000(남자), 8000000(여자)으로 입력함
- 마.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번호 기재, 전화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바.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 비밀번호, 수험번호 등이 공개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바람
- 사. 입학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 아.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자.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 차. **입학 이후에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에 주요사항 누락, 위·변조 또는 허위 등의 사실이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예치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카. 입학전형 자료 및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수정·취소·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IV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국내 12년 기준)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모든 전형은 졸업학년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1.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 격 요 건	
정원 외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정원무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 ※ 부모의 국적 및 국외 거주(재직) 기간과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되는 순수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본교 원스탑서비스센터 ☎ 02)6935-3973 로 문의 바람

2. 세부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세부지원자격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의미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1개 학년 3 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1,2 term을 이수시 1학기로, 2,3 term을 이수시 2학기로 인정함. 3개의 term을 모두 이수시에 1개 학년으로 인정함
 - 1개 학년 4 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1,2 quarter를 이수시 1학기로, 3,4 quarter를 이수시 2학기로 인정함. 4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시에 1개 학년으로 인정함
-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3년에 포함될 경우에도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개시일부터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함
-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국외 근무,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기간의 시작	기간의 종료
근무기간	재직(경력)증명서상의 국외근무 발령일	재직(경력)증명서상의 국외근무 종료일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국외근무 확인서류」, 학생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 체류기간을 산정함
- ※ 재학 인정기간 중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후부터는 지원자와 친권자(부 또는 모)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하거나 공동친권일 경우 양육권 보유자를 부 또는 모로 간주함)
- ※ 현지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세금 납부기간으로 적용하되,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상에 나타난 출입국 기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함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세부지원자격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주1)} 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주1)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북한이탈주민 세부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한해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3. 국내·외 학교의 학력, 재학기간, 교육과정 및 졸업 인정기준

가. 국내·외 학교 학력 인정기준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 인정함
 - ※ 어린이집/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비인가학교(대한민국 각 시·도 교육감 비인가 학교 포함),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경우 국외학교 학력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정규학력으로는 인정함
- 국외 학교의 학력은 부모가 거주(근무)한 국가에 소재한 정규학교에서의 학력만을 인정함
 - 단, 지역, 종교,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제3국 수학 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되, 인정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함

나. 국내·외 학교 재학기간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 국외와 우리나라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 과정(6년-3년-3년-4년)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학기간을 산정하며, 최종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 ※ 단, 입학일이 4월인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교교 졸업예정자는 2025년 3월 말까지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2) 13학년제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12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산하여 지원자격을 심사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Year1~Year13)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3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Year 13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완료하여야 고교졸업으로 인정함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외/국내고교에서 1개 학년 이상을 이수하다가 국내/해외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 또는 고교과정으로 신입학 하는 경우, 중복된 해외학교 이수과정은 지원자격 산정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다. 국내·외 학교 졸업 인정기준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외에서 국내의 고등학교(각 시·도 교육감 인가 학교)로 전학하여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 12년에 상응하는 전체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라도 국외 고등학교(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 전학하여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 12년에 상응하는 전체 교육과정을 마친 자

라. 학기 중복

1)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V 서류제출

1.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연번	자격구분 제출서류	정원 외(2%) 국외근무자의 자녀	비고
1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표	본교양식을 출력하여 사용(제출하는 서류명에 ✓ 체크)
2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	재학한 국외고교 수 만큼 작성(초,중학교는 작성할 필요없음) ※재외 한국고등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3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사확인^{주1}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 가능) ※재학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입학), 전출(졸업))의 연/월/일이 학기별로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
4		중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학교(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하여 제출가능함
5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6		국외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국외 중·고교 재학 학년 학기의 개시일/종료일 명기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학생 본인 기준)	
8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모두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공공기관, 인터넷 발급민원(정부)
9		사실증명발급·열람 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모두 제출)	본교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10		여권 사본(부, 모, 학생 모두 제출)	
11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국외거주사실 증명서류^{주2} (부, 모, 학생 모두 제출)	영사민원24, 국외주재영사관
12		국외근무 증빙서류(부 또는 모)^{주3}	영사확인^{주1}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13	해당자만 제출	학교에서 발급받은 사유서(또는 학교장 확인서)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서류제출 관련 특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
14		제3국 수학사유서	
15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주4}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주1) 영사확인 : 외교부(<http://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참고

주2) 국외거주사실 증명서류 : 여권에 날인 된 한국 및 체류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체류국가 내 체류자격이 명시된 사증(비자)란, 국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체류국 임대차 계약서, 체류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체류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주3) 국외근무 증빙서류 : 국외기관 발행 서류는 해당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국외근무 증빙서류	국외파견 공무원	정부 발행 국외파견 기간 및 국가명이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 파견증명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만 지원 가능
	국외파견 상사직원	본사 발행 국외파견 기간 및 국가명이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 국외지사 설치신고(허가)서(해외직접투자신고(허가)서)
	국외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초청장 또는 추천서, 재직(경력) 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국외정부발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소득세 납입증명서
	현지 취업자	재직(경력)증명서(국가명, 재직기간 명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 납입증명서
	기타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국외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주)4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이 친권자와 거주하였을 경우 (공동친권 제외)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된 서류)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한 경우 (또는 공동친권인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양육권판결문 또는 양육권 협의서(자의 양육과 친권 결정자에 관한 협의서) 1부 (양육비부담조서, 이혼조정조서, 이혼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강제조정결정문 등 양육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된 서류) 2.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친권(또는 양육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성립일 전까지 친권(또는 양육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친권(또는 양육권)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 부터 계모 또는 계부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 사망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 또는 모 사망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을 기준으로 계모 또는 계부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일 전까지 사망한 부 또는 모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자격구분	정원우관		북한 이탈 주민	비 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		
1	제출서류 목록표	●	●	●		본교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제출하는 서류명에 √ 체크)
2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	●	●			재학한 국외고교 수 만큼 작성 (초, 중학교는 작성할 필요 없음) ※재외 한국고등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3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영사확인 ^{주)1}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 가능) ※ 재학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입학), 전출(졸업))의 연/월/일이 학기별로 반드시 명기 ※국내학교(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 기록부(학기별 성적 및 재학기간 표기 필수)로 대체하여 제출가능
4	중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5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			
6	국외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	●			국외 중·고교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종료일 명기
7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공공기관, 인터넷 발급민원(정부)
8	사실증명발급·열람 신청위임장(학생)	●	●			본교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9	여권 사본(학생)	●	●			
10	외국국적 증명서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			
11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12	출입관계증명서(상세) 및 국적취득 사실증명서(본인 기준)					
1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행
14	고교졸업학력인정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각 시·도 교육청 발급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15	학교에서 발급받은 사유서 (또는 학교장 확인서)	해당자	해당자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서류제출 관련 특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해당자	해당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주)1 영사확인 : 외교부(<http://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참고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목록표(목록표 내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와 함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를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나.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단, 국외의 발급서류는 국외에서의 재학 / 근무 / 거주 중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
 2)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상에는 **해당기간(입학·졸업일, 전입·전출일, 입사일·퇴사일·근무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 재학증명서에는 전입(입학), 전출(졸업)의 연/월/일이 학기별로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성적증명서에 졸업 또는 재학기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가 졸업 또는 재학사실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 라.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받아 제출
 2)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받아 제출
- 마.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함
- 바.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사. 부·모의 근무지가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자는 지역·종교·전쟁 등의 특성상 제3국 수학이 불가피하였음을 나타내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 1부를 첨부해야 함
- 아.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경우 최종합격 후 고교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입학일 이전까지 본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최종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
 ※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자. 본교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자 및 지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차.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카. **입학전형 자료 및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VI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전형일	비고
영어 필답고사 100%	2024. 7. 19.(금) 10시 (09시 30분까지 입실 완료)	- 고사시간 : 80분 - 문항수 : 60문항 내외 - 영어 객관식 필답고사로 오답감점제 적용

2. 전형 시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해당 고사장, 수험생 유의사항 및 필답고사 응시요령 등을 확인하기 바람
- 나. 지원자는 수험표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졸업예정자에 한함) 중 택1 등)을 지참하고 고사에 임하기 바람
- 다. 수험표 분실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험표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음
- 라.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학자격을 박탈하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 마. 고사에 결시한 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바. 표기한 답안은 고칠 수 없으며, 이종표기·낙서·답안을 고친 경우에는 해당문항은 '0' 점 처리함
- 사. 고사실 내에는 전자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사전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아. **2025년 2월 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개시일 이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함**
[단, 우리나라보다 졸업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5년 3월말까지 졸업 시 가능]
- 자. 모든 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름
- 차. 입학 후 제반 규정은 본교 학칙에 준함
- 카. 본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준하여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3. 선발기준

- 가. 정원 외
 - 1) 계열별 모집인원의 100%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지원자의 총점수에 따라 선발함
 - 2) 총점수로 모집인원 안에 들었으나 최대모집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 처리함
 - 3) 동점자 발생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 나. 정원외관 : 교육여건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발함. **입학 전형 성적이 다른 합격자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 라.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4. 서류심사

- 가. 지원자격에 관한 심사는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제출서류에 관한 사실조회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므로 일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 나.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입학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VII 전형료

1. 전형료

구분	지원자격	전형료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157,000원
정원무관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전형료에는 원서접수 수수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전형료 환불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후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답고사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단, **서류제출 기간[2024. 7. 8.(월) ~ 12.(금)]**내에 ‘입학원서’와 ‘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를 제출한 자에 한함)

※ 환불금액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7,000원)를 제외한 금액임

다.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라. 원서접수 시 입력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람

마.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전형의 응시자가 타 학교와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VIII 지원자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1.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 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는 포함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나.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 횟수로 산정함

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

-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를 통하여 수험생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 등록의사는 등록(예치금 납부 등) 결과로 판단함.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나.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추가(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환불) 신청을 완료한 후, 추가(총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라.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마.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의 신입생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3. 기타 지원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누락·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나. 이미 제출한 원서와 제출서류는 수정·취소·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추천 절차(주무부장관·재외공관장·시도교육감)를 거치지 않으므로 지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제출 시 지원자의 학력, 국외거주, 체류, 재학 사실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함
- 라.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4.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최종합격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입학일 이전까지 본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 원서접수 시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최종합격 후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제출서류	구분	원서접수 시점에 졸업예정자	원서접수 이후		원서접수 시점에 지원자격 충족한 졸업자
			최종학기를 국외에서 재학해야 지원자격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졸업증명서 ^{주1)}		●	●	●	추가 제출서류 없음
최종성적증명서 ^{주1)}		●	●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학생만)	
국외거주사실 증명서류 ^{주2)}			●(부, 모, 학생)		
국외근무 증빙서류 ^{주2)}			●(부, 모)		

^{주1)} 국내 고교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최종 성적증명서 대신 최종 생활기록부로 대체하여 제출가능함

^{주2)}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9 ~ 11쪽 참조

5. 모집단위 내 전공결정

학부로 입학한 경우 입학 후 학생 자신이 속한 모집단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신청하고 학부성적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음

6.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운영 안내

- 가. 본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나. 본교 입학처로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음
- 다. 제출된 이의 신청사항은 사안 및 중요도에 따라 답변하며,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함

7. 장애 수험생에 대한 응시 편의 제공

- 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본교에 통보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나.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I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환불 안내

1.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개별 통보하지 않음**)
- 나. 합격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등록금 고지서 포함) 등을 확인하여 문서등록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합격자로 확정함

2. 합격자 등록 및 등록포기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최초 합격자 등록	2024. 12. 16.(월) ~12.18.(수) 1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여 등록의사 확인 (별도의 예치금납부 없음) ※ 문서등록 방법은 추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추가 합격자 발표	2024. 12. 19.(목) ~ 12.26.(목)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시 총원내용 공지 예정
등록포기	2024. 12. 19.(목) ~12.26.(목) 18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문서등록 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문서등록 포기 진행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 등록포기 메뉴에서 진행 ※ 본교에 등록 후 타대학에 (추가)합격한 경우 등록을 포기한 후 타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 포기가 완료된 후에는 반복할 수 없음

- ※ 해당 기간내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문서등록을 하였어도 등록금 납부기간(2025.2.10.(월) 10시 ~ 2025.2.12.(수) 16시)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최종합격이 되며,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됨

3. 입학 이후 등록금 반환

- 가.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나.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다.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함

X 학사안내(장학금, 기숙사, 학사, 국제교류, 취업 프로그램)

1. 신입생 장학제도

가. 세종인재양성 프로그램

세종인재양성프로그램은 신입생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 수준 높은 심화교육과 각종 특전을 제공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임

-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 대학원 학업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
- 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재정적 지원과 Sejong Honors Program(SHP)을 통해 세종글로벌 창의인재로 양성
- 1:1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사·석사·박사 3+3 프로그램(학사 3년, 석·박사 3년) 이수 가능
- 프로그램별 주요 지원내역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비고
세종 대양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건축학과의 경우는 5년간) ▪ 4년간 매년 학업장려금 4,800만원 지원(건축학과의 경우는 5년간) ▪ 자격요건 충족 시 교환학생 우선 선발 및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환학생 학업장려금(기숙사비+항공료) 지원(최초 1회한) ▪ 졸업 후 본교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 졸업 후 해외명문대학 대학원 진학 시 학업장려금 1억 5천만원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SHP 의무이수
글로벌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건축학과의 경우는 5년간) ▪ 4년간 매년 학업장려금 3,000만원 지원(건축학과의 경우는 5년간) ▪ 자격요건 충족 시 교환학생 우선 선발 및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환학생 학업장려금(기숙사비+항공료) 지원(최초 1회한) ▪ 졸업 후 본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석사과정) 등록금 전액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 졸업 후 해외명문대학 대학원 진학 시 학업장려금 1억원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나. 기타 장학금

장학대상	장학명	지원내용		비고
		학부	대학원 등 요건	
입학성적 우수자	최우수인재 장학금 법학과 특별장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건축학과 5년간)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 시 수업연한 내 등록금 전액 지급	SHP 의무이수
	우수인재 장학금	4년간 등록금 50% (건축학과 5년간)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 시 수업연한 내 등록금 50% 지급	
	계열 우수인재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전액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 시 입학학기(1학기) 등록금 지급	
	첨단학과 특별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전액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 시 입학학기(1학기) 등록금 지급	
	자유전공학부 특별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전액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 시 입학학기(1학기) 등록금 지급	
예체능 특기자	예체능 특기 장학금	등급에 따라 4년 혹은 1년간 등록금 전액	등급에 따라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급	-
국방시스템공학	국방시스템공학과 장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	대우 및 특전 모집요강 참고
항공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전공 장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	
사이버국방	사이버국방학과 장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호텔외식관광관광프랜차이즈 경영학과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30%	-	-
	글로벌조리학과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30%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 장학제도 - 신입생 장학제도” 참조

※ Sejong Honors Program 매학기 이수조건: 직전학기 평점평균(GPA) 3.5이상 취득 및 일정 영어 성적 획득 등 (SHP 이수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양휴머니티칼리지홈페이지(<http://classic.sejong.ac.kr/>) 참고)

2. 기숙사 안내

- 가. 새날관 행복(공공)기숙사는 총 716명 규모의 기숙사로 침대, 책상, 욕실, 세탁실, 휴게실, 푸드코트, 편의점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2인 1실 형태로 운영
 - 나. 기숙사 홈페이지 (<http://happydorm.sejong.ac.kr>)를 통해 신입생은 1~2월 중 입사신청을 받으며, 6개월(반기) 신청만 가능하다. 공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로 건립되어 저렴하게 운영
 - 라. 신청 가능지역은 우선선발 지역(※서울 제외) 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
- ☎ **관련문의 : 기숙사 생활지도실 02-3143-8200 ~ 8203**

3. 학사 안내

가. 전공선택

- ① 자유전공학부 입학자
 -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 배정방법 : 단대/학과(전공)별 최소요건 충족 시 신청에 따라 배정
 - ② 계열 입학자
 -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 배정방법 : 신청지망순위 및 성적에 따라 배정
 - 전공배정인원 : 학과(부) 모집정원의 150% (* 학부 입학자와 통합 배정)
 - ③ 학부 입학자
 -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 배정방법 : 신청지망순위 및 성적에 따라 배정
- ※ ①, ②, ③ 입학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배정된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나. 복수전공·부전공

- ① 신청자격 : 복수(부)전공 신청 희망자(일부 계약학과 및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소속 학생 제외)
- ② 신청가능 복수(부)전공(학과) : 입학년도 모집단위 모든 전공(계약학과 및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제외)
- ③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 ④ 선발방법 : 복수(부)전공자 선발은 성적, 실기 전형(예체능학과) 등 학과 심사를 거쳐 선발
- ⑤ 이수시기 및 이수방법 : 선발 이후 학기부터 해당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과 02-3408-3039**

다. 연계·융합전공

- ① 신청자격 : 연계·융합전공 신청 희망자(일부 계약학과 및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소속 학생 제외)
- ② 신청가능 전공

구분	전공명	연락처
SI 연계융합전공	스마트투어리즘매니지먼트소프트웨어프로그램	02-3408-3314
	자율비행체ICT프로그램	02-3408-3333
융합전공	글로벌미디어소프트웨어융합전공	02-3408-3307
	비즈니스애널리틱스융합전공	02-3408-3360
	럭셔리브랜드디자인융합전공	02-3408-3665
	문화산업경영융합전공	02-6935-2409
	영상디자인융합전공	02-6935-2409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융합전공	02-3408-3665
	예술융합콘텐츠융합전공	02-3408-3324
연계전공	융합창업연계전공	02-3408-3360

- ③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 ④ 선발방법 : 연계·융합전공 선발은 복수전공과 유사함
 - ⑤ 이수시기 및 이수방법 : 선발 이후 학기부터 해당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⑥ 기타 : 연계·융합전공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에 해당학기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조할 것
- ※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전공, 복수전공, 연계·융합전공” 참고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과 02-6935-2706**

라. 세종인재자기설계전공

- ①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새로운 전공을 구성한 후 학교의 승인을 받아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 ② 대상교과목 : 모든 학부(과) 전공 교과목
- ③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 ④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 ⑤ 선발방법 : 관련학과 자문교수/학과장 심사 및 교육과정위원회 승인 후 선발
- ⑥ 이수시기 및 이수방법 : 선발 이후 학기부터 자기설계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과 02-6935-2706

마. 교직이수

- ① 신청자격 : 1학년 33학점 이상 이수한 교직 설치학과 소속 신청 희망자
 - 교직설치학과 : (2024학년도 입학자 기준이며, 2025학년도 입학자는 교육부 승인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어국문, 영어영문, 교육, 역사, 행정, 경제, 경영학, 호텔관광경영, 화학, 회화, 패션디자인, 음악, 체육, 무용, 영화예술
- ② 신청기간 : 2학년 1학기
- ③ 선발인원 : 학과 정원의 10%이내(교육부 승인인원 이내)
 - ※ 교직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2024학년도 기준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 따라서 입학 후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수업-교직이수”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관련문의 : 교무처 교직과 02-3408-4168

바. 전부(전과) : 재적 중인 학부(학과)에서 다른 학부(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절차

- ① 모집인원 : 모집단위의 40% 이내(학기별 20%)
 - ※ 전출인원 제한 : 원소속 모집단위 인원의 40%(학기별 20%) 이내(전과 지원 시 대학성적순(평점평균))
- ② 지원제한
 - 같은 학부 내의 타 전공으로의 지원 불가
 - 타 학과에서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계약학과로의 전부(전과) 지원 불가
 -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입학자, 글로벌조리학과 입학자, 국방시스템공학과 입학자, 항공시스템공학전공 입학자, 사이버국방학과 입학자, 계약학과 입학자, 편입학자는 지원 불가
 - 예체능대학 학과 중 무용과, 음악과, 영화예술학과, 회화과 전입 제한
- ③ 지원자격 : 2학기 이상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로 1학년 수료학점(3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단,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④ 전형방법 : 대학성적 50%, 면접 50% (예체능대학은 실기시험 가능)
 - ※ 전부(전과) 제도는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전부(전과)” 를 참고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과 02-3408-3039

사. 휴학

-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징집,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 ② 휴학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으로 하며, 군휴학을 제외하고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과 02-3408-3036

아. 기타사항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전공, 사이버국방학과는 재입학이 불가함(단, 6학기 이상 이수자는 재입학 가능)
 매 학기말 평균성적 70/100 미만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타제적됨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

가. 해외파견학생 프로그램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에 따라 본교의 학생을 상대교에 파견하고,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

나. 프로그램 종류

- ① 교환학생: 본교 등록금 100% 납부, 상대교 등록금 전액 면제
 - 지역전문가: 본교 등록금 50% 납부(국제교류장학금 50% 감면), 상대교 등록금 전액 면제
 - Global Excellence Scholarship Program: 본교 등록금 전액 면제, 상대교 등록금 전액 면제, 200만원 생활비 지원
- ② 방문학생: 본교 등록금 30% 납부(국제교류장학금 70% 감면), 상대교 등록금 100% 납부
- ③ 복수학위: 본교 등록금 30% 납부(국제교류장학금 70% 감면), 상대교 등록금 100% 납부, 상대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시 세종대와 상대교 학위 모두 취득
- ④ SAF 방문학생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

- 본교 등록금 30% 납부 (국제교류장학금 70% 감면) + SAF Korea 프로그램 비용 납부 (파견교별 상이함)
- 장점
 - ㉔ 외부 기관 (SAF Korea) 에서 진행하는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지원 시점부터 파견까지의 시간이 1년이 소요되는 정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달리 6개월만에 파견 갈 수 있음
 - ㉕ Harvard, UC Berkeley, UCLA,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같은 미국과 유럽의 우수 대학에 파견갈 수 있음

다. 일정 및 준비방법

구분	봄학기 파견	가을학기 파견
지원시기	파견 직전년도 3월~4월 경	파견 직전년도 9월~10월 경
모집공고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국제교류 게시판	
준비사항	※ 지원 시 반드시 어학성적이 필요하므로 미리 어학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최저 어학조건	지역	어학요건
	미주	IBT 79, IELTS 6.5. TOEFL ITP 530
	유럽	IBT 72, IELTS 5.5. TOEFL ITP 500, TOEIC 750
	일본	어학연수 과정은 어학성적 불필요, 학부 수업 수강 희망 시 JLPT N2 이상
	중국	어학연수 과정은 어학성적 불필요, 학부 수업 수강 희망 시 Level 4 이상
	아시아	IBT 50, IELTS 4.5. TOEFL ITP 470, TOEIC 600
※ 최저 어학조건은 대학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 주요 자매교

국가	학교명	위치
미국	Angelo State University	중남부 텍사스주
미국	Auburn University	동남부 앨러배마주
미국	Augsburg College	중북부 미네소타주
미국	Ferrum College	동부 버지니아주
미국	Johnson & Wales University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미국	New Jersey City University	동부 뉴저지주
미국	San Diego State University	서남부 캘리포니아주
미국	Temple University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하와이제도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중부 네브래스카주
미국	Slippery Rock University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Youngstown State University	동부 오하이오주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동남부 플로리다주
미국	University of Houston	중남부 텍사스주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중부 서스캐처원주
멕시코	Universidad Juarez del Estado de Durango	북부 두란고
독일	Augs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남부 바이에른주
독일	University of Bamberg	남부 바이에른주
독일	DHBW-Ravensburg	남서부 하헨버그
독일	Cologne Business School (CBS)	북서부 쾰른
독일	RheinMain University	중부 비스바덴
독일	University of Passau	남부 바이에른주 파사우
독일	Dresd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동부 작센주 드레스덴
네덜란드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서부 헤이그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	북부 흐로닝언주
벨기에	HOWEST	북부 오스텐더
벨기에	ICHEC Brussels Management School	중부 브뤼셀 (수도)
벨기에	Thomas More	안트베르펜주 메헬렌
프랑스	Ecole Management Normandie	서북부 르아브르
프랑스	EDC Paris Business School	오드센주 쿠르브부아
프랑스	ESME Sudria Engineering School	북부 릴
프랑스	EPITA	파리 남부 빌뤼프
프랑스	ESC Rennes School of Business	북서부 렌
프랑스	ESSCA School of Management	서부 앙제
프랑스	Groupe Ecole Supérieure de Commerce Pau	남서부 포
프랑스	Hautes Etudes d'Ingenieur	북부 릴
프랑스	IGR-IAE Rennes (University of Rennes 1)	북서부 렌

국가	학교명	위치
프랑스	SKEMA Business School	북부 릴
프랑스	Sup Biotech	파리 남부 빌쥐프
프랑스	Toulouse Business School	남서부 툴루즈
프랑스	Universitè Catholique De Lille	북부 릴
프랑스	EnsAD	북부 파리 (수도)
스페인	CESINE	북부 산탄데르시
스페인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북부
스페인	Universitat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스페인	Universitat Jaume I	동부 발렌시아주
스페인	University of Basque Country (UPV)	북부 비스카야주
스페인	University of Jaen	남부 하엔주
스페인	University of Malaga	남부 말라가주
포르투갈	University of Porto	북부 포르토
핀란드	HAAGA-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남서부 포르보
리투아니아	LCC International University	서부 클라이페다주
리투아니아	Vilnius University	동부 빌뉴스주
리투아니아	Kaunas University of Technology	중부 카우나스주
라트비아	Riga Technical University	중부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Bifrost University	남서부 보르가르네스
러시아	Ural Federal University	중앙부 예카테린부르크
터키	Ozyegin University	서부 이스탄불주
중국	Anhu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동부 안휘성 병부시
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北京理工大学	동북부 베이징시
중국	Beijing Language & Culture University	동북부 베이징시
중국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北京工业大学	동북부 베이징시
중국	Capital Normal University	중부 후베이성 이창시
중국	Changchun Normal University 长春师范大学	진린성 창춘시
중국	Changchu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长春理工大学	진린성 창춘시
중국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华东师范大学	동부 상하이시
중국	Hefei University	동부 안휘성 합비시
중국	Jilin University	동북부 지린성 창춘시
중국	Liaoning University	동북부 라오닝성 선양시
중국	Linyi University	동부 산둥성 린이시
중국	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东北林业大学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국	Ocean University of China	동부 산둥성 칭다오시
중국	Qingdao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동부 산둥성 칭다오시
중국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동북부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	Zhengzhou University	중앙부 허난성 정저우시
중국	Shanghai Theater Academy	징안구 상하이시
중국	Sichuan Normal University 四川师范大学	쓰촨성 청두시
중국	Donghua University	동부 상하이시
홍콩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남부 가우룽반도 홍콩
홍콩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남부 가우룽반도
싱가포르	PSB Academy	남부 부킷
대만	Asia University	중서부 타이중
대만	National Taipei University	북부 신베이
대만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남서부 가오슝
대만	Dayeh University	남부 장화현
대만	Fung Chia University	중서부 타이중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타이베이시 원산 구
일본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동부 간토지방 시바현
일본	Mie University	관서지방 미에현
일본	Nihon University	동부 간토지방 도쿄도
일본	Otemae University	관서지방 효고현
일본	Shinshu University	중부지방 나가노현
일본	University of Shimane	남부 주고쿠지방 시마네현
일본	Oberlin University	동부 간토지방 도쿄도
일본	Toyo University 東洋大學	동부 도쿄도

국가	학교명	위치
카자흐스탄	Kazakh-British Technical University	남동부 알바티주
카자흐스탄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아스타나시
인도네시아	Binus University	서부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Berjaya University	쿠알라룸푸르 연방준주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서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University Utara Malaysia	북서부 케다주 신타
브루나이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북부 반다르스리브가완
베트남	Hanoi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베트남	Duytan University	남중부 다낭시
태국	Chiang Rai Rajabhat University	치앙라이주
태국	Kasetsart University	중앙부 방콕
태국	Thammasat University	중앙부 방콕
필리핀	Santo Tomas University	남서부 마닐라

마. 특별 파견 프로그램

① 정규학기

해당학과	파견교	파견기간	대상
국제학부 (일어일문학전공)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1년	- 일어일문전공 재학 중 1년 파견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1학기	- Disneyland와 연계한 Internship 과정

② 복수학위

해당학과	파견교	파견기간	대상
국제학부 (중국통상학전공)	중국 상해 교통대학	2년	- 54학점 이상 이수 예정인 학생

5. 취업·진로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진로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재학생들은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부터 경력개발, 현장실습 그리고 실전취업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 취업·진로 교과목

구분	과목명	학점	학기	참여대상	계열
진로	세종인을위한진로설계	1	1학기	전학년	교양필수
	진로설정과자기개발	2	1·2학기	1~2학년	교양선택
	취업과진로	2	1·2학기	2~3학년	교양선택
취업	취업전략및사회진출	2	1·2학기	4~5학년	교양선택
	취창업과진로설계	1	1·2학기	3~5학년	교양필수

나. 취업·진로 비교과 프로그램

세종대학교 학생경력개발시스템(<https://udream.sejong.ac.kr/>)에서 일정 및 내용 확인

다. 현장 실습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기업에게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조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분	계열	과목명	참여대상	학점	지원방법
정규학기	전공 선택	현장실습 1 ~ 6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3	학생경력개발시스템 (https://udream.sejong.ac.kr/) 을 통해 지원
		현장실습 7 ~ 9		6	
		현장실습 10 ~ 11		9	
		현장실습 12		12	
계절학기		현장실습 1 ~ 6		3	
		현장실습 7 ~ 9		6	

제출서류 목록표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지원 모집단위	학과(학부)		
비상연락처1		비상연락처2	
지원 자격구분 (해당란에 ✓ 표기)	()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번호	지원자격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1	국외근무자의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조회 동의서	※ 재학한 국외 고등학교 수 만큼 작성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제외) ※ 초·중학교 작성 필요 없음
2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입학), 전출(졸업)의 연/월/일이 학기별로 반드시 명기되어있어야 함
3		중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국내학교(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4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학기별 성적 및 재학기간 표기 필수) 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5		국외학교 학사일정(School Calendar)	※ 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 중·고교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종료일 명기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 중·고교 재학 학년의 학사일정표
6	국외근무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학생 기준)	
7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모두)	
8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모두)	
9		여권 사본(부, 모, 학생 모두)	
10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국외거주사실 증명 서류(부, 모, 학생 모두)	
11		국외근무 증빙서류(부 또는 모)	
12	전 교육과정 이수자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학생)	
14		여권 사본(학생)	
15		외국국적 증명서(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학생) [해당자만 제출]	
16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1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국적취득 사실증명서(학생) [해당자만 제출]	
18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9		고교졸업학력인정서(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20	기타	학교에서 발급받은 사유서(또는 학교장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서류제출 관련 특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	
21		제3국 수학사유서 [해당자만 제출]	
22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서류 목록표(본 양식)와 함께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 ※ 국외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
- ※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 동의서)
 (For verification of educational record)

수험번호	_____
이름	_____
모집단위	_____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06, Korea
 Tel: +82-2-3408-3456 Fax: +82-2-3408-3556 E-mail: ipsi@sejong.ac.kr <http://www.sejong.ac.kr>

School Name	_____
School Postal Code(Zip Code)	_____
School Address	_____
School Phone Number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국외학교에 등록된 본인이름)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_____, who transferred from your school, studying here at Sejong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deeply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in strict confidence. For your reference, please see the student's Letter of Consent.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Jae Mun Byun
 Vice President, Office of Admission _____

LETTER OF CONS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ejong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5 academic year and agreed to allow Sejong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ejo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가 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국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Date of birth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Name and Signature(서명필수)		Additional comments	
Date		Signature and Title	

일자표기 Ex) 05 - 02 - 2024

Month - Day - Year

※ 노란색 배경부분만 지원자가 기록, 서명 필수



세종대학교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청서를 작성 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 및 공적서류(학교장, 교육부 발급 등)에 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인정 요청 사유 등을 토대로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심사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지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국외근무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자격 미충족사유	<input type="checkbox"/> 지원자의 재학기간 <input type="checkbox"/> 지원자의 체류기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내용 : _____)		<input type="checkbox"/>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input type="checkbox"/> 국외근무자의 체류기간		

지원자격 인정 희망기간		소명 서류명	발급처	지원자격 요청 사유
일자	해당 학년/학기			*최대한 자세히 작성 (소재 국가명 등)

위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신청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1. 회색란은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부, 모, 학생 각각 1부 발급 (해외근무자의 자녀) / 학생 1부 발급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2. 발급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까지(to)				
※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조회한 날짜와 동일하게 기재. 즉 학력요건 3년 또는 12년에 해당하는 기간 입력				

용도 (Purpose) **대학 입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세종대학교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02-3408-3456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 입학 자격 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OO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OO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Where a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